

日本軍‘性奴隸’問題의 歷史學的 接近

姜 萬 吉

1. ‘從軍慰安婦’가 아닌 ‘性奴隸’

어떤 事實이나 事項이 가지는 역사적 성격을 한층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개념과 명칭을 사실에 더 가깝게,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설정하고 命名하는 일이 요긴하다. 그런 뜻에서 보면 구일본군 주둔지에 설치된 ‘위안소’에서 군인들의 일방적 性的 충족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을 지금까지 從軍慰安婦로 부른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우선 從軍이란 말의 의미를 분석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從軍하는 사람에는 記者와 같이 자의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위안부’들과 같이 타의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강제 종군도 종군이긴 하지만 자의성과 타의성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종군으로 명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음 ‘위안부’란 말은 더욱 잘못된 것 같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안소’에서의 야만적인 성행위를 통해 ‘위안’을 받는 일본군인들의 입장에서서 그들을 주체로 하여 붙여진 명칭이며, 그것에 동원된 여성들의 처지를 고려하여 붙여진 명칭은 아니다. 그 여성들의 경우 군인들에게 ‘위안’을 제공하는 것은 전혀 본의가 아니었으며, 그곳에서의 성행위는 자신들에게는 위안이 아니라 고통 중의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命名은 객관성과 과학성에 의해 이루어져야함은 더 말할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종군위안부’란 명칭을 무엇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한가 생각해 보자. 구일본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성적 충족의 대상이 된 여성들의 대부분은 빈곤으로 인한 기만적 인신매매의 결과 ‘위안소’로 보내졌거나 권력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보내졌다. 그들은 ‘위안소’에서 엄격한 감시 아래 집단수용되었고 일본군당국이나 그 위촉을 받은 경영자에게 노예처럼 예속되어 생활했다.

약간의 보수가 정해져 있었다 해도 대부분의 경우 도망과 이탈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군 당국이나 ‘위안소’ 경영자들이 보관했다가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한 후에는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은 빈곤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기만적 인신매매나 강제동원으로 충당되어 보수도 자유도 없이 일본군 당국에 예속된 채 성적 희생을 강요당한 그들을 ‘從軍慰安婦’로 부르는 것은 마땅치 않는 것 같다. 그것보다는 ‘性奴隸’로 명명할 때 그 역사적 성격이 한층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2. 韓國史學界와 ‘性奴隸’問題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지 반세기가 되었고, 그 군대의 ‘性奴隸’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까지 한국의 역사학계가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민족의 역사학에게 주어지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그 민족해방운동사의 줄기를 세우고 가르침으로써 植民被支配期間에 추락된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불행하게도 식민지시기의 反植民主義 歷史學이 8·15 후의 그 학계에 위치하지 못함으로써 민족해방운동사의 연구와 체계수립은 새로운 세대의 역사학자가 양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대체로 1960년대 초엽부터 민족해방운동사가 연구되기 시작했으나 민족분단이 가져다 준 조건 때문에 그것은 右翼戰線運動의 연구에 한정되었고, 198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左翼戰線運動이 공산주의운동사가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사의 일환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치는 시기 한국 역사학계의 일제식민지시대사 연구는 좌우익 민족해방운동사의 연구와 체계수립에 총력을 기울였고, 따라서 ‘被害의 歷史’에 대한 연구는 뒤로 미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변명’이 가능하다면, ‘피해의 역사’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지금부터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와 노동력강제동원문제도 ‘피해의 역사’ 중 일부이다. 그러나 그것은 ‘피해의 역사’ 중에서도 웬체 非人道的이고 暴壓的인 부분이며, 또 개인적 차원으로서도 직접적이고도 처참한 피해였기 때문에 현재 생존한 사람만이라도 그들의 생전에 반드시 진상이 구명되고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역사학적 연구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표출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없었다 해도 한국과 특히 일본 쪽에서 부분적 연구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것을 다시 간추려 보면 대체로 ‘성노예’생활 자체의 실태문제를 비롯하여 강제성문제에 초점을 둔 ‘성노예’가 된 동기문제, 책임 및 보상문제와 관련한 ‘성노예’의 동원과 ‘위안소’ 운영에서의 일본군 및 정부 당국의 관여여부, 일본제국주의 패전 후의 그들의 귀환과정 문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상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문제 중에서도 관심의 초점은 강제동원여부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을 위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보려 하지만, 그것에 앞서 어느 나라의 학계보다 먼저 구일본군‘성노예’문제를 본격적으로, 그리고 정력적으로 연구하여 많은 성과를 내어 놓은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타」 소속 연구자 여러분의 학자적 양심과 높은 연구열을 높이 평가해 마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양심적 연구성과가 일본정부 당국의 정책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의 활동이 하나의 裝飾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3. ‘性奴隸’가 된 動機問題

일본은 그 근대화과정에서 「藝娼妓解放令」(1872)이 내려진 후에도 실제로 公娼制度가 유지되었으며, 1930년대 이후 침략전쟁 때의 이른바 軍慰安所도 그 연속선상에서 설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철저

한 儒敎倫理中心社會였던 조선의 경우 일제식민지시대 이전에는 공창제도 같은 것은 없었고 개인영업의 色酒家에 酌婦로 불리는 賣淫女들이 있었으나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서민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 이외의 성생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배계급인 양반은 대개 쫓을 두었다.

근대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그 군인의 본국여성 및 점령지역 여성에 대한 강간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식으로 위안소 같은 것을 설치한 예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구일본군이 본국과 점령지역에 군위안소를 설치한 것은 역시 공창제의 연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軍公娼制로서의 慰安所를 설치하고 그 '성노예'를 일본인 公娼女나 淪落女만으로는 부족하여 그 식민지인 조선의 여성으로 충당하려 했을 경우 종래 극소수 밖에 없었던 色酒家의 賣淫女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했고 결국 일반여성을 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나타난 각종 문헌자료와 직접 일본군위안부로 희생되었던 조선여성들의 증언을 토대로 일본군이 '성노예'를 확보한 경우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종래의 색주가 매음녀가 충당된 경우도 있었겠으나 이는 극히 소수였고, 둘째 일반여성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酌婦를 모집을 한 경우도 있었으나 역시 많은 경우는 아니었다. 유교윤리 중심사회였던 조선의 경우 아무리 가난한 부모라 해도 딸을 공공연하게 작부로 파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세째 가난한 집안의 소녀들을 상대로 일본 등지의 工場女工으로 알선한다고 속여 先金을 주고 대려가 '성노예'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적용된 것이라 파악된다.

네째 침략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농촌이나 도시의 소녀들을 강제로 납치하여 충당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성노예'로 희생되었던 여성들의 진술자료가 있을 뿐이다. 또 女子挺身隊 습이 발동된 이후에는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성노예'로 충당되었다는 진술도 있으나 객관적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조선인들은 여자정신대로의 강제동원을 '處女供出'이라 부르고 그것이 곧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는 일이라 인식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되었다가 重勞動과 饑饉 등을 견디지 못해 탈출했다가 실패하여 '성노예'로 강제 편입되었다는 진술도 있다.

4. '性奴隸' 動員과 史料問題

일본군이 조선여성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충당한 방법 중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역시 그 강제성여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노예'를 확보하는 임무를 띤 일본의 각 기관이나 그 要員들이 조선여성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납치했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文獻資料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여자정신대로 강제동원된 조선여성을 바로 '성노예'로 충당했다는 직접적인 기록도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의 파악으로는 先金을 미끼로 조선 貧民의 딸들을 공장 여공으로 취업시킨다고 속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넘긴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충원방법이었다고 인정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內閣官房內閣外政審議室이 발표한 「소위 從軍慰安婦問題에 대하여」에서는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영자의 의뢰에 의해 알선업자들이 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경우 전쟁의 확대와 함께 그 인원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런 상황 아래서 업자들이 감언으로 속이거나 위협하는 등 본인의 意向에 반하여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는 등의 경우도 보였다.”고 했다.

일본정부의 공식발표는 ‘성노예’ 확보의 <주체>는 군당국의 요청을 받은 ‘위안소’ 경영자와 그 의뢰를 받은 알선업자이며, 그들이 “본인의 의향에 반하여 모집한 경우”를 인정하고 관헌이 이에 가담한 경우를 인정하면서도 ‘성노예’ 확보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모집>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일본정부는 아직 ‘성노예’ 확보의 주체가 그 정부기관이나 군당국이었음과 그 방법이 강제납치 혹은 강제동원이었음을 명쾌하게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그 근거는 그것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문헌자료가 없다는 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아무리 비인도적 집단인 구일본군이라 해도 ‘성노예’ 확보를 위한 식민지여성의 납치를 공공연한 문서로 지시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행정문서가 남아있고 지금 그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둘째 설령 군당국이나 경찰관서 등에서 그런 문서를 작성했다 해도 패전 후 일본인들이 철수하면서 그대로 두고 갔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구일본군의 朝鮮軍司令部文書와 조선총독부의 機密文書가 8·15 직후의 며칠에 걸쳐 대량으로 소각된 사실이 그것을 뒷바침해 주고 있다. 대한제국시기의 일본공사관문서와 같은 식민지시대 이전의 문서까지도 이 때 소각하려했으나 조선인 직원의 기지로 소각을 면한 實例가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官斡旋 徵用 등에 의한 노동력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일본정부 당국의 공식문서들이 상당량 남아 있으며, 그 희생자들의 증언채취도 비교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제 그 자료들과 증언을 역사학적 방법에 의해 분석함으로써 그 전모를 과학적으로 구명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이에 비하면 ‘성노예’ 문제의 경우 그 생활실태를 밝힐만한 자료들은 어느정도 수집되었는데 비해 그 강제동원을 증명할만한 구체적 자료는 희생자들의 진술이 대부분이다. 역시 객관적 자료의 발굴 수집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구일본군이나 경찰기관이 조선여성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동원하기 위한 지시문서를 작성했다면, 비록 구일본군의 조선군사령부문서는 모두 소각되었다 해도 조선총독부나 그 지방관서 문서의 어느 한 부분에라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피해의 역사’ 연구자들이 6·25전쟁의 戰禍를 입지 않은 지방관서의 문서들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면밀히 조사하여 찾아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조사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다.

5. '性奴隸'問題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

조선여성의 구일본군 '성노예'로의 충당이 조선총독부와 군당국에 의해 계획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문헌자료를 통해 증명하려는 노력은 특히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에 의해 정력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가 조선여성이 중국 등 일본군점령지역으로 '성노예'가 되어 가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자료와 '위안소'를 일본군이 직접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 등이 밝혀졌고 또 널리 보도되었다. 다만 강제동원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증명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강제동원을 증명해줄만한 구체적 자료만 수집되면 보상문제 등 법률적 문제만 남고 '성노예'문제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은 일단락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뿐만아니라 '성노예'문제의 역사학적 접근은 이제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군의 '성노예'들이 강제로 동원되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역사학적 측면에서는 그 많은 '성노예'가 어떤 역사적 조건에 의해 생산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노예'는 두말할 것 없이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정책의 산물이다. 인신매매에 의해 '성노예'가 된 경우 그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중요하며, 拉致 脅迫 欺瞞 등 강제적이고 사기인 방법에 의해 '성노예'가 된 경우 그것을 가능하게 한 식민지시기의 통치체제적 조건이 중요하다. '성노예'문제를 다루는 역사학적 방법론이 그 동원방법이나 생활실태를 밝히기 위해 그것을 증명해주는 단편적 자료를 찾아내어 발표하는 데 한정된다면 오히려 '성노예'문제의 역사성을 소홀히 하거나 왜소화시킬 우려가 있다.

유교적 전통이 깊은 조선의 농촌여성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은 1920년대 농촌경제 파탄의 결과였다. 1910년대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을 그 식량공급지로 편성한 일본은 1920년대를 통해 미국증산을 강요했다가 1920년대 말기의 경제공황으로 조선농촌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이제 몇가지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해 보자.

1926년 9월말 현재 전국의 貧窮農戶는 전체 농가의 6.2%였으나 1930년에는 春窮農家가 전체 농가의 47.2%나 되었으며, 1927년 봄의 경우 약 15만 명이 생활고로 離農했고 이후 이농민은 급증해 갔다. 1932년 1월부터 4개월간 전라북도의 이농민은 3만 3천명이었고 그것은 전년도 같은 시기의 離農民 9천 1백여명보다 38%가 증가한 것이었다. 전국의 乞人數도 1927년의 4만 6천 3백명에서 1931년에는 5만 4천명으로 증가했다. 1926년에는 自殺 餓死 凍死 貧困被殺이 합쳐 2천 4백여명이었으나 1935년에는 3천 5백 5십명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현실이 농촌 貧民들로 하여금 몇백원의 先金과 외국 工場에의 취업이란 甘言에 속아 그 딸들을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게 했다. 그리고 1930년대 후반기 일본의 중일전쟁 도발과 1940년대 초 태평양전쟁 도발 이후 戰線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성노예'의

수요는 계속 증대되었고 조선 농촌이 그 중요한 공급원이 된 것이다.

拉致 당한 여성이나 강제동원된 근로여자정신대원을 '성노예'로 충당한 직접적인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 진상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아래서 파탄에 빠진 조선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만적 인신매매를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가 유지된 사실 그것만으로도 '성노예'제의 역사성은 설명될 수 있다.

1930년대 후반기 이후 침략전쟁의 수렁에 빠진 일본제국주의는 국가총동원령·지원병령·징병령·징용령·여자정신대령 등을 통해 전체 조선민족의 전쟁협력을 강요했다. 일본군 '성노예'의 충당문제는 법령으로 정할 수 없었고 어쩌면 공식문서로도 남길 수 없었을 것 같은 극히 비인도적인 부분의 하나이다. '성노예'문제는 앞으로 1930년대 이후의 '피해의 역사' 중 일부로서 객관적 연구를 거쳐 일본제국주의 식민정책의 성격을 밝히는 작업의 일환이 될 것이다. 또한 응분의 보상을 통해 '피해의 역사'와 '가해의 역사'를 청산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4. '性奴隸'問題의 歷史性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점령한 지역 즉 중국·버마·필리핀·마레이시아 등지에 일본군을 위한 '위안소'가 설치되고 거기에 점령지역의 여성들이 '성노예'로 동원된 사실과, 비전투지역 조선의 여성들이 기만적 인신매매 혹은 강제납치에 의해 이들 일본군 점령지역의 '성노예'로 동원된 정과는 그 역사적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침략전쟁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시적 현상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오랜 식민지배가 가져 온 경제적 파탄과 식민지배정책의 강압에 의해 전투지역이나 군사적 점령지역이 아닌 후방의 식민지 여성들이 '성노예'로 동원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여성의 일본군 '성노예'화는 흔히 전투 현장에서 피정복민족 여성들이 당하는 일시적인 불행이 아니라 비전투지역인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오랜 식민지배의 결과로 빚어진 일이었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 자체가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고 보상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조선여성이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던 일 역시 경제적 자원 및 문화적 자원의 수탈, 노동력의 강제동원 등과 같이 식민지시대의 역사적 사실로서 기록되고 또 보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선여성의 일본군 '성노예'화는 두나라 군대가 맞붙어 전투를 한 결과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한 일방적 식민지배의 결과였다는 점에 다른 민족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침략과 수탈의 史實은 반드시 일본의 2세국민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트침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앞 세대와 같은 침략주의자가 아닌 새로운 평화주의자로 교육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노예'문제를 포함한 강제동원 전반의 역사도 예외일 수 없다. 이 점은 현대 일본의 민족적 자존심 및 국가적 명예, 그리고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민족국가로서의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세계 모든 국가사회의 기성세대는 그들의 2세를 평화주의자로 양성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게 해야 하는 인류사적 세계사적 의무를 가지고 있

다. 일본의 경우 과거의 타민족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화, “본인의 의사에 반한” ‘성노예’로의 강제동원 등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보상하는 일이 오히려 그 2세국민을 침략주의자가 아닌 평화주의자로 양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편, 한반도 주민의 ‘성노예’문제에 대한 기억과 바른 이해는 이웃 민족과의 어두웠던 과거를 기억하는 일보다 제 민족사 실패에 대한 처절한 반성거리가 되는 데 옳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성노예’문제가 가지는 안팎의 미래지향적 역사성은 바로 이 점에 있다.